



의안번호	제 2020 - 30호
의 결 연 월 일	2020. 12. 7. (제106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1
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 보고	
1. 공청회 개요 .....	2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2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2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5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6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	7
IV.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50
2. 관련 규정 .....	50
3. 공개 방법 .....	50
4. 추진 일정 .....	51
V.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	52
VI. 2019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	61
VII.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	63
VIII. 2021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	64

---

##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가. 개요 ..... 70

나. 회신 완료 접수 의견 ..... 70

###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81

나. 민원 우편 ..... 82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회의	제137차	2020. 11. 16.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관계 기관, 공청회, 행정예고) 검토</li><l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 범위</li><li>○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의 권고 형량 범위</li><li>○ 과실치사상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li></ul>

## II.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5차 공청회 결과 보고

### 1. 공청회 개요

- 일시: 2020. 11. 2. 14:00 ~ 17:20
- 방식: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 주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참석자: 총 80여 명
  - 양형위원회 위원장
  - 양형위원 : 김우수(상임위원), 심석태, 원혜옥, 이주원 위원
  - 전문위원 : 손철우, 강수진, 김희연, 백광균, 유관모, 김혜경, 이형일, 최승원, 최준혁, 박성훈 위원
  - 자문위원 : 고문현, 신혜수 위원
  - 일반시민, 기자, 변호사, 법원 관계자 등

### 2.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자

- 사회자: 김우수 상임위원
- 발표자: 손철우 수석전문위원
-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지정토론자
  -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윤정(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지정토론자
  -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 신진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변호사)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지정토론자
  - 김현아(김현아 법률사무소 변호사)
  - 이경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 공청회 지정토론 요지

####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통상의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명칭을 붙이고 별도의 양

- 형기준 편제를 둔 점은 바람직하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디지털 양형기준안은 ‘선도적’ 기준을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양형실무뿐만 아니라 법관 대상 조사, 국민참여형 모의 양형컨퍼런스, 양형인식 연구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권고 형량 범위의 최하한인 감경영역 하한은 양형법관에게 하향이탈의 소명 부담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처벌불원을 처벌불원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거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둔것은 평가할 만한 성과이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김한균 선임연구위원)
  - 디지털 성범죄에 행위 태양에 따른 더 세부적인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윤정 교수)
  - 영리 목적 제작 등 범죄의 형량 상한을 더 상향하자는 의견(이윤정 교수)
  - 양형인자 중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윤정 교수)

####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반포 행위에 대한 형량 범위가 낮게 설정되어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승희 대표)
- 특별히 의미가 있어 성범죄 양형기준에 준용될 필요가 있는 양형인자들도 많지만, ‘촬영물/합성·편집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농아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의 각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승희 대표)

- 집행유예 참작사유 중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등 항목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승희 대표)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경우에는 종전 양형실무인 실형과 집행유예 비율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하고,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와 관련해서는 작성 범죄인 소유형 1과 반포 범죄인 소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양형인자로 포함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특별양형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와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범죄의 정의 규정이 다르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신진희 변호사)

#### 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 ‘협박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보다는 ‘협박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협박·강요에 이용된 촬영물, 복제물을 자발적으로 완전 폐기한 경우’ 등의 사유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을 가중요소로 두자는 의견(김현아 변호사)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두지 말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김현아 변호사)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서 법정형 내에 있으나 양형기준안 권고 형량범위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경렬 교수)
- 인질 강요, 인질 강도 등 인질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는 의견(이경렬 교수)

#### 4. 공청회 일반 방청객 의견 요지

##### 가. 일반 방청인 의견 1

- 특별감경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의 정의 규정에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 등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미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 등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음. 따라서 이 요소는 삭제하거나 일반감경인자로 분류하여야 함
-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하더라도, 그 범죄의 약한 형량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약해져서는 안 됨

##### 나. 일반 방청인 의견(질의) 2

- 아동이 피해자인 성착취물 범죄가 미국에서처럼 엄벌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재판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II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준안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104차 회의(2020. 9. 14.)에서 의결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 나. 조회 기간

- 2020. 9. 21. ~ 2020. 10. 21.

#### 다. 회신 기관

##### ○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은 기관

- 55개(국회 4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11개 기관(단체)이 회신
- 각급 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 ○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지 않은 기관

- 5개 기관(단체)이 회신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여성의 당, 리셋, 부산대 여성주의 대모임 헤쳐(Hatcher), 시민단체 DEBUNK

#####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의한 개인 의견

- 송선○ 등, 총 66건(동일인의 중복 제출 건수 포함) 제출

#### 라. 회신자료

- 별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은 기관 : 총 11개 기관(단체) 회신

#### 가. 각급 법원

##### (1) 특별감경사유 추가에 관한 의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종전부터 있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칭만 바꾼 것인바(정의는 그대로임)
- 제시된 양형기준안은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을 실제로 착취한 경우를 엄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는 영상물의 경우(실제 성착취행위)는 문제가 없음.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은 검사 증명책임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흔히 설명되는데(피해자 불특정 시 처벌 못하는 문제), 이것 역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문제는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임. 현재 대법원의 해석상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예컨대 배경이 학교이고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으며 대화내용 등으로 학생임이 명백하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봄(실사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연기한 배우가 성인임이 명백하다면 처벌하지 않는 경향이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실제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내용만으로 판단하게 됨)
- 실제 성착취물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용어를 나누었어야 하나 이는 입법의 영역이므로 법원이 관여할 수는 없음. 그러나 양형기준까지 나누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사례가 지나치게 많이 나올 것임.
- 현재 기준대로라면 외국 사이트에서 고교생을 그린 음란 애니메이션을 1회 다운받은 데 불과한 사람도 최소 6개월의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되는 것임. 물론 이는 20. 6. 2.자 개정법 자체의 심각한 문제(소지자 외에 시청자 추가 종전에 선택형으로 있었던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의 징역만 남김)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음.
- 제작 쪽에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외국에서 음란 애니메이션을 하청받아 제작에 관여하였다면 무려 2년 6개월이 하한이 되는데(이것도 개정법의 문제임), 실사가 아니어서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까지 실제 성착취와 동일하게 처벌하

는 것이 맞는지 의문임.

-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므로, 서둘러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나(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할 경우 위헌제청이나 현재 비실사 영상물에 관한 대법원의 견해 변경을 구하는 하급심의 판단이 다수 발생할 수 있음), 만약 당장 적용이 필요하다면 실사영상이 아닌 경우를 추가적인 특별감경사유 등으로 제시하거나 기준 비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주셨으면 함.

## (2)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관한 의견

### ○ 의견

현 재	의 견
<p>양형기준 27쪽</p> <p>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p>	<p>양형기준 27쪽</p> <p>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및 <u>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u>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p>

### ○ 이유

- 양형기준 3쪽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인자로 하고 있고, ‘처벌불원’을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처벌불원’보다 더 중하게 고려하는 양형인자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양형기준 27쪽 중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나. 법무부

## (1) 검토 배경

- '20. 9. 15. 대법원 제7기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군 양형기준 안」에 대한 의견요청

## (2) 양형위원회 초안 요지

- 디지털 성범죄를 5개 범죄군으로 분류하여 양형기준 마련
  -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③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등, ④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⑤ 통신매체이용음란

### [제7기 양형위원회(2019. 4.~2021. 4.)]

위원장 : 김영란(63세, 사연 11기, 前 대법관)

위원 : 위원장 포함 13인, 검찰 위원 2인(서울고검장, 대검 공송부장)

전문위원회(실무 협의 기구) : 전문위원 13인, 검찰 위원 2인(대검 연구관 2인)

## (3) 법무부 의견

### (가) 형량범위에 대한 의견

- 4개 범죄군(②~⑤)은 검찰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형량범위 상향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군(①)은 형량범위 상향 필요
  - 범죄군 내 대표적 범죄행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출입 범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기본구간은 징역 5~9년
  - 반면, 법정형이 동일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기본구간이 징역 8~12년으로 설정되어 시행 중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성범죄라는 공통점이 있고 법정형이 동일함에도 양형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불합리 해소 필요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와 동일 내지 근접한 수준으로 기본구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감경·가중구간도 상향함이 상당
  - 또한, 하위 범죄유형인 “영리목적 판매 등”, “배포 등”, “알선”, “소지” 범죄 역시 양형기준을 적절히 상향하여 동일 범죄군 내 전체적인 양형기준의 균형을 꾀함이 바람직

### [현재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강간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5	(아동·청소년)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양형위원회 형량범위(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수출입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2	영리목적 판매 등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3	배포 등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4	아동·청소년 알선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5	소지	6월 - 1년4월	10월 - 2월	1년6월 - 3년

(나)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3개 범죄군(①~③)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음
- 다만, 2개 범죄군(④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⑤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추가 필요
  - ①~③ 범죄군은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반면, ④~⑤ 범죄군은 이에 관한 규정 없음
  - ④~⑤ 범죄군 역시, 치밀한 계획적 범행,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 또는 신중의 전문적 수법을 이용한 범행, 다수인의 조직적 범행 등이 발생할 개연성 있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적정
  - ④~⑤ 범죄군에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함이 상당(별첨 양형인자표 참조)

[별첨]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양형인자표(통신매체이용음란도 동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b>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b>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동종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 공동범행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다. 대한변호사협회

### (1) 제정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음.

### (2) 검토의견 : 찬성·일부보완 의견

#### (가) 결론의 요약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하 ‘양형기준안’) 중 대유형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감경인자로 추가하거나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보완의견,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불균형에 대한 보완의견, 중첩되는 항목의 가중요소를 통합하는 보완의견 외에, 나머



지 내용에는 찬성합니다.

## (나) 구체적 검토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 보완

####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sup>1)</sup>에서는 현재와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2호 제5호<sup>2)</sup>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명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다.<sup>3)</sup>

그러나 구 청소년보호법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용어 명칭을 바꾼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착취·성학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이하 ‘판례’)은 구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하여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①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② 영상의 제작행위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유 참조.



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판례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제작·배포 등의 행위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전제하고 있으나, 당초 청소년성보호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sup>4)</sup>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인데,<sup>5)</sup> 그렇게 스스로 제작한 음란물을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에 올린 것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sup>6)</sup>

이러한 사안은 온라인을 통한 유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적인 소지를 위해 제작된 경우와 달라, 판례에서 제시한 ①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온라인 유포를 전제로 하거나, 실제로 그와 같은 유포가 있게 된다면, 단순히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판례에서 제시한 ②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록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개정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요건에서 성적착취·성적학대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처벌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에서 제시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 본인 출현 음란물 제작·유포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제외하는 법개정이 필요한지,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해석을 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로 추가하는 판례변경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논의로 하고, 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기존에 입법자가 예상한 전형적인 의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에 추가하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형범위를 벗어나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각주 등으로 부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2)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의 불균형: 보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 중에서 성범죄 관련 범죄 외에는 전체적인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항목 수가, 그리고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행위와 관련된 가중

4) 김슬기, “아동·청소년이 제작한 음란물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법학논문집 제39집 제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2015), 178쪽.

5) 위의 글.

6) 위의 글, 각주 2) 참조.

요소와 감경요소의 항목 수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양형기준안에서는 가중요소가 감경요소보다 많고, 실제 사건에서 많은 경우 가중영역에 속하게 되는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사건이 많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통상 여러 가중요소가 인정되어, 가중영역에서 다시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실상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형량범위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유사하게, 디지털성범죄에서도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항목 수를 균형적으로 설정하고, 대다수를 가중영역으로 선고되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양형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 3) 중첩되는 가중요소의 조정: 보완

양형기준안에서는 5가지 대유형에 해당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모두 공통적으로 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의 범죄특성상, 가중요소가 인정될 만한 사건은, 다른 가중요소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별도의 가중요소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불특정이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도, 그 자체로 가중요소에 해당하지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 밖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범행을 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하는 경우라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도 다시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 운용은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을 나눈 양형기준에

서 가중영역만 사실상 이용되는 기형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관념적으로 다른 양형인자로 제안되었지만, 사실상 중첩되는 가중요소는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중요소의 중첩적인 적용으로 사실상 가중영역만 운용하는 방식보다는,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기본영역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사안에 따라 감경영역, 가중영역을 선택하게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완의견입니다.

## 라.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음

## 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1) 의견 요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관한 의견은 1항에서 도표로 정리하고, 나머지 범죄에 관한 의견은 2항에서 그 요지를 밝힙니다.

#### (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 내지 5항)

##### 1) 양형기준

구 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 견		
감 경 요 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 위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행 위 자 / 기 타	농아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자수 또는 중요한 수사협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일 반 양 형 인 자	행 위	소극 가담	소극 가담	
			처벌불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 위 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구 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 건
가 중 요 소	/기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일반적 수사협조
	행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조직적 범행
			전문적 범행
			범행수법 매우 불량
			가해자 다수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피해자를 그루밍하여 범행
			피해자가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혹은 성착취물에 묘사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
			성착취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가 성범죄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그 시도	
		대량범	
	행위자/기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동종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부인 제외)
		인적 신뢰관계 있는 경우	
		상습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계획적 범행
			2인 이상 공동 범행
	행위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	

구 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 건
	/기타	(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력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구 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 건
부 정 적 참 작 사 유	주 요 참 작 사 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계획적 범행
			전문적 범행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10년 이내 벌금형 혹은 선고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유포결과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량범인 경우	
		피해 회복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약물중독, 알콜중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구 정	주 요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의 견	
적 참 작 사 유	참작사유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자수
		진지한 반성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소극 가담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은 감경인자 중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대체할 수 있는 감경인자로서, ①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②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에서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③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서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④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서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한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범죄들이 '디지털 성범죄'라는 본질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양형기준에는 없는 양형인자를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제출 의견의 분량(약 52쪽)이 많아 요지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전체 의견 내용은 별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한국성폭력상담소

### (1) 양형기준 설정이 되지 않은 성폭력이 '경미한' 성폭력은 아닙니다.

이번 디지털 성폭력 양형기준안에 포함된 범죄 중 대부분은 이미 법조항에 존재한 지 오래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왔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최초로 2009년에 의결되었고,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이 2014년에 의결된 것에 비교해서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유포'등은 성범죄 (또는 성매매 범죄) 양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요소로 '동종 전과'를 따질 때 양형위원회는 동종 전과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가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범죄는 여러 측면에서 '경미한 범죄'로 위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서 경미하게 판단되어 온 것이며,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판결을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경합범으로 재판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것은 협박죄 뿐이어서 해당 형량범위에서 양형이 설정되었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만 따"른다고 실시되어 적절한 처벌에 공백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고 1~5유형이 포괄된 것을 환영하며, 동시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이 '경미한' 성폭력으로 인지,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2) 실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양형기준 설정 이후의 계속된 과제입니다.

2020년 5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신설되어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이번 양형기준(안)에서는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1유형 협박>에 대하여 기본 1년-3년, 감경 9월 - 1년 6월, 가중 2년-4년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화상, 음향, 영상을

피해자에게 500회 넘게 전송한 사안인데,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것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협박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통신매체이용음란’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단 이 사건 뿐 아닙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전송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266)에서는 형법상 협박죄도 적용되지 않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더불어 ‘통신매체이용음란’만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 이제는 다른 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본이 4월 - 10월이기 때문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적용될 경우 3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범조항과 양형기준의 신설이 같은 범죄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더 다가가는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면밀히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사건에서 “아동 음란물이 외부에 유통되지 않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어 1심을 과기하고 형량을 깎아준 판결도 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206 판결). ‘외부에 유통’한 것은 또 다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요하지 않는 기소에 대해, 이 점을 유리한 감경요인으로 삼는 점은 재판부가 디지털 성폭력을 ‘경미한’사건으로 구성해 온 임의적 방식이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안에 이와 같은 감경요인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바, 앞으로 재판부의 자의적인 감경요인으로 판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3)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분류	양형인자 정의	해당 유형
감경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li> <li>-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성착취물(특별)</li> <li>2. 카메라등이용촬영(특별)</li> <li>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특별)</li> <li>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특별)</li> <li>5. 통신매체이용음란(특별)</li> </ol>

#### (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분류	양형인자 정의	해당 유형
가중요소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경우</li> <li>-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성착취물(특별)</li> <li>2. 카메라등이용촬영(특별)</li> <li>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li> <li>-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li> <li>- 인터넷 등의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li> <li>-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이익 제공으로 유인한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특별)
--	--	------

◆ 의견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형인자 정의] 중

기존 안	의견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삭제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기존 안	의견
1, 2, 3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적용	1, 2, 3, 4, 5유형 모두에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적용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계획적 범행’이 가중요소로 존재했으나 위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립하면서 새로이 기재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이 충돌할 경우 두 특별인자는 상쇄되는 것인지 우려됩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보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되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지만, 박사 외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박사가 시작한 범죄를 따라했으며,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계속 갱신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 시기의 범죄 유형을 모방하고 응용하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에서 위 두 가지 요인을 재판부는 어떻게 제대로 적용할 것인지, 예컨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한 자는 누구라고 판단할 것인지 다시 임의적, 자의적 판단을 하

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는 1부터 5유형 모두에 적용되어 있는 반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가중요소는 1, 2, 3유형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4.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5.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유형에서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가능하므로, 4, 5 유형에도 해당 가중요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분류	양형인자 정의	해당 유형
감경요소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li> <li>-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li> <li>-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성착취물(특별)</li> <li>2. 카메라등이용촬영(특별)</li> <li>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특별)</li> </ol>

**◆ 의견**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양형인자 정의] 중

기존 안	의견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삭제

피해 복구 조치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의미있으나, 영상물의 '회수'라는 말을 착시를 일으킵니다.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등의 정의 내용은 데이터 삭제 전문 업체들의 성행, 성폭력 가해자 전문 로펌들의 활약으로 이어지거나, 그 결과 삭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부 리포트만 내는 것으로 얼마든지 제출될 가능성이 큼니다. 최소한 삭제나 복구 노력은 가해자에게서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확인한다든지, 제3의 기관에게 확인을 거치는 등의 판단 기준 필요합니다.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인자 정의	해당 유형
가중요소 (행위)	<p>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성착취물을 ①제작, 수입, 수출하거나 ②불특정 다수 또는 피해자의 가족, 같은 교육시설의 교사·학생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 사람에게 판매·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동청소년성착취물(특별)</li> <li>2. 카메라등이용촬영(특별)</li> <li>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특별)</li> <li>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특별)</li> </ol>

	여·배포·제공하거나, ③판매·대여·배포·제공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④공연히 전시, 상영하거 나, ⑤구입·소지·시청한 경우 -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 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 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 통신매체이용음란(특별)
--	---	-----------------

◆ 의견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정의내용] 중

기준	의견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 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리, 가정생활, 학업, 생계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 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위 요소는 1부터 5유형 모두에서 특별양형인자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것이 디지털 성폭력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의 내용을 보면 극도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임을 전제하고 있거나,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성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p><b>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b></p> <p>○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p> <p>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p> <p>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p> <p>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p> <p>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p> <p><b>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b></p> <p>○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p>
--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재판부가 생각하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에게 일어난 가학적 침해행위”는 피해자에게 일어난 신체, 심리, 생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아니라 특정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심지어 요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피해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보이는 ‘특히 문제가 되는 성’에 대한 규정을 뜻하는 듯합니다.

이에 비해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심리, 사회경제적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듯 하지만, 그 구체적인 예시가 매우 좁고 피해자에게 현격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 역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질문하거나, 양형조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예시가 좁을 수록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재판부에 알리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좀 더 폭넓게 둘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의 문장은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규정하고 있는 감경요소의 정의 문장과 비교해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 (마) 진지한 반성

### ◆ 의견

#### ○ ‘진지한 반성’을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전면 삭제

모든 유형에서 ‘진지한 반성’은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지한 반성’을 어떤 근거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에 따라 당면한 형벌을 감형하기 위해 ‘진지한 반성’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가해자들은 감형을 위해 반성문 대필, 꿈수 기부·사회봉사, 가해자 가족을 동원한 호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sup>7)</sup>에 따르면 2019년도에 선고된

7)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양형 판단이 필요하다! : 가해자 중심적 양형기준 판단에 부처’ (한국성폭력상담

하급심 137건의 판결 중 1/3에 달하는 판결들이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양형의 고려 요소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반성'에 대한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판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로서의 판례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 법관들의 자의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양형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일방적인 후원·기부나 사회봉사 사실을 '진지한 반성'에 대한 판단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단의 타당성이 의심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점, SNS를 통해 '양형시 제출서류 팁'이나 '성범죄 대응매뉴얼' 등이 공유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가해자의 반성이 형식적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도 구속된 조주빈 등 피고인들이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면피성 주장과 설명하는 내용과 모습은 그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반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반성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하게 되어 '진지한 반성'을 양형기준으로 고려하는 목적과 의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 (바) 사회적 유대관계

### ◆ 의견

#### ○ '사회적 유대관계'를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에서 전면 삭제

사회적 유대관계는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요건으로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주요참작사유입니다. 현재 사회적 유대관계는 여러 판결에서 가족 및 친지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이 있을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하여 형을 감경하는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인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은 범죄를 저질러서 형을 선고받을 시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같은 형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잃는 것이 더 크

소 양형위원회 제출 의견서, 2020년 2월 20일)

[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1&f\\_cate=&idx=5429&board\\_md=view](http://www.sisters.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2&page=11&f_cate=&idx=5429&board_md=view)

고, 그러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된 점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성폭력 행위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범죄를 저지를 시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 범죄 방지에 그다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어려운 첫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잃을 것이 두려워 두 번째 범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모순적입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유대관계는 언제 인정됩니까. 오랫동안 남성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많은 성적 관계 경험이 하나의 사회적 자랑거리나 힘과 지위의 과시로 여겨지고, 남성중심적인 사회 유대 관계를 성매매의 제공을 통해서 쌓기도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에 대한 관습적인 개념이 성폭력에 허용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가족의 생계의 주 수입원이었을 경우, 좋은 품성이나 선행을 베풀지 않았더라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에서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는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의 동료 공무원들의 공무원증을 수십장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가족이 공직을 범죄자인 아들을 위해 이용했으며, 자신의 직장내 직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동료나 부하직원들의 사회적 보증을 취했을 가능성도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헤아리려는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 **(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으로, 디지털 성폭력이 근절되고,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는 큰 변화를 절실히 기대합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집행유예 사유로 고려되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가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사유로 들어 있어서, 피해자가 겪어온 문제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방향과 내용이 기존의 성범죄 양형기준, 성매매 양형기준도 개선되도록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의 현실에 재판부가 면밀히 다가가고, 엄중히 이에 사법부가 응답하며, 어떤 피해가 일어난 것인지 사회적 개입이 시작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4404 판결문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며 마칩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성폭력 범죄에 재판부가 엄중히 응답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건은 (중략) ‘음란’의 보편적 개념인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 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 형량의 기준

#### (가) 감경요소

##### 1) 농아자

과거와 달리 특수교육의 발달 등으로 농아자들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같은 수준에 미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일률적으로 농아자를 감경사유로 두는 것은 오히려 농아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농아자라는 사정을 일률적인 감경요소로 두기보다는, 농아자의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를 다른 감경요소인 심신미약에 포함시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입증될 수 있을 것인가에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여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하여 탄원서를 제출해오고 있으나, 이러한 반성이 재판부가 아닌 범죄 피해자들을 향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질서입니다. 따라서 반성을 하는 것을 감경인자로 두기 보다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을 가중인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 횟수와 무관하게 한 번의 범죄만으로도 온라인으로 피해가 대량으로 파급되는 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의 초범 개념을 디지털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빠른 확산력이라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맞지 않아 이는 감경요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리라 생각합니다.

## (2) 집행유예 기준

### (가) 긍정적 사유

#### 1) 진지한 반성

위에서 본 1. 가. (2)과 같이 진지한 반성을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이 없음을 부정적 사유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지 아니한 과거에는 범죄자의 가족들에 대한 부양책임을 양형요소로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사회의 부양책임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지금 수형자 가족들에 대한 부양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가 해결해야 하며, 따라서 이는 더 이상 양형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 아.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1)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가) 특별양형인자에서 감경요소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반영에 대한 의견

1) 성범죄의 경우 특히 준강간에서 대부분 ‘고의’에 의해 만취의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피의자’에게 심신상실을 고의로 유발했는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항거불능 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실정임. 즉, 현실에서 ‘피의자’에게 고의성(귀책사유)를 묻는 방식으로 법이 작동되고 있지 않음. 오히려 심신상실의 이유로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 서술식 기준을 추가하여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지고, 고의적인 심신미약 상태 야기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서술식 기준 추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 존재.

2) ‘정신질환자’를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자로 규정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



하는 경우가 많음. ‘정신질환’의 경우 ‘정신질환’이 어느 시점에 발현되어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도’를 갖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감경요서에 본인 책임없는 심신 미약 상태로 분류 됨. 하지만 사회적 양상을 보았을 때 “성폭력 범죄자는 정신질환자”라는 프레임이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현실이 존재함. 이러한 상황은 ‘정신질환자’는 곧 ‘예비범죄자’라는 혐오를 재생산하게 됨. 또한 동시에 성폭력 범죄를 ‘사회 구조에 기반 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적 개인에 귀인 한 범죄라는 통념이 작동함. 하여 정신질환자의 성폭력 범죄 이후에 대한 사회적 조치, 예를 들어 치료감호소등의 구금시설에서의 적극적 치료 조치 및 보완적 대안 등이 심도 있게 고민되어야 할 것임.

## **(2)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가)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항목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의견**

- 1) 모든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성정과 대처양상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양상/양태/느낌은 제각기 다양함. 피해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사람 마다 주관적이므로 판사 개인의 주관적 느낌, 감정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음.

### **(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수정 및 삭제 의견**

- 1) 피해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풀어 서술하여 수정하거나 위 항목을 삭제 할 것.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는 어떤 것인지 의문이 듦. 오히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여야 ‘진짜 피해자’, ‘순결한 피해자’ 라는 통념들을 재생산하고 강화할 우려가 있음. 또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증명해야하는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2) 하여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함.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실업, 이직 및 노동권의 침해 등 피해자의 일상을 중단하게 만드는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수정 제안함.

### **(다)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 수정 및 삭제 의견**

- 1) (가)항목의 1)의 이유와 비슷한 맥락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극도로 성적 수치

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성정과 대처양상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양상/양태/느낌은 제각기 다양함. 피해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의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음.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주관적이므로 판사 개인의 주관적 느낌, 감정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 **(3) 진지한 반성**

#### **(가) 진지한 반성의 감경인자 삭제**

- 1)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관적/감정적 의사 이므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함. 감형을 이유로 법정에서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품거나 이후 보복을 하는 경우도 많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는지, 반성을 하였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2차 피해는 없었는지 등 수사에서 재판과정까지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오히려 반성을 안했을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임.

### **(4)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 해당조항 전체 삭제**

##### **1) 촬영물, 복제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 가) 이미 촬영, 소지, 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유포하기 전에 삭제 또는 폐기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놓은 것은 이미 개정된 법과 균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 나) 촬영, 소지만으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임.

##### **2) 유포된 촬영물, 복제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 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한 번 유포가 되면 회수가 어려움.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 또한 파일 제목을 토대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디지털 기기/플랫폼 등 온라인상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음
- 나) 이러한 이유로의 특별감경인자 조항을 뒀을 경우, 피의자들은 감경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다른 시장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음.

다) 유포로 이득 본 재산을 회수하고 몰수해서 국가에 반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임.

## **(5)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 **(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삭제**

- 1) 협박·강요의 경우 입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가중될 위험성이 있음. 현행 형법에 있는 (준)강간/강제추행죄도 협박·강요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되어있음. 피해자는 얼마만큼의 협박과 강요가 있었는지 또다시 증명해야 할 수 있으며 ‘경미하다’는 것은 피해 당시 범죄발생 전후 맥락, 피해자의 성향, 가/피해자와의 관계 권력 등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 **(6)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가) 도달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음란성)가 경미할 경우 조항에서 ‘음란성’ 삭제**

- 1) 피해가 ‘음란하다’의 경우 판사 주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음.

## **(7) 주요 및 일반참작 사유에서**

### **(가)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분명’ 삭제**

- 1)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분명의 유무에 따라 발생된 범죄가 없어지거나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추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없음.
- 2) 사회적 유대관계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함.

## **(8) ‘몰래카메라’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 1) 양형위원회에서 정리한 자료에서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이 6p에 명기되어 있음. 사회적으로 혹은 맥락 상 ‘몰래카메라사건’이라고 명명되는 경우가 간혹 존재함.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만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자. 탁틴내일

### (1) 디지털 성범죄 정의

- ‘디지털 성범죄’를 용어로 채택한 근거 제시 필요
- ‘성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성폭력 범죄, 성매수, 성매수 알선행위 등 성매매 관련 범죄,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양형기준안에서 사용하는 성범죄의 용어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와 어떤 관계 인지 기술하면 좋을 듯함
- ‘양형기준안’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규정한 것은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1내지 5항, 7항),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동법 제14조), 허위영상물등의 반포(동법 제14조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동법 제14조의3)로 성범죄 중 디지털로 제작된 혹은 재현된 성범죄를 특정하는 것인지 궁금함
- 일각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3호에 11조에서 15조까지의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의 범죄는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범죄에 대해 ‘디지털’, ‘온라인’, ‘사이버’ 등이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함.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개념화하고, 다양한 사안들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대응책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함. 만약 용어를 일관되지 않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정책적 대응의 비일관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통상 ‘사이버’는 가상 세계의 특성을, ‘디지털’은 범죄 행위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혹은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지거나 재현된 특성을, ‘온라인’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특성을 표현하며 ‘사이버’ ‘디지털’과 ‘온라인’ 모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sup>8)</sup>에 기반 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혹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성범죄로 표현하기도 함

### (2) 형량 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8) The term "ICT" encompasses any communication device or application, including radio, television, cellular telephones and computer and network hardware and software. (Guideline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201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제작 등	양형위의견	2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3년
		수정의견	3년 - 6년	5년 - 9년	7년 - 무기징역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양형위의견	2년6월 - 5년	4년 - 8년	6년 - 12년
		수정의견	3년 - 5년	5년 - 8년	6년 - 30년
3	배포 등	양형위의견	1년6월 - 4년	2년6월 - 6년	4년 - 8년
		수정의견	2년 - 4년	3년 - 6년	4년 - 30년
4	아동·청소년 알선	양형위의견	1년 6월 - 4년	2년 6월 - 6년	4년 - 8년
		수정의견	2년 - 4년	3년 - 6년	4년 - 30년
5	구입 등	양형위의견	6월 - 1년 4월	10월 - 2년	1년 6월 - 3년
		수정의견	6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30년

- 기본 범위는 법에서 정한 형량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함
- 무기 징역이 가능한 ‘제작 등’ 범죄는 가중범위를 무기징역까지 나머지는 유기 징역의 상한인 30년까지를 범위로 해야 함
- 성착취 알선은 죄질이 제작과 별 차이 없으나 법에서는 형량을 구분하고 있기에 감경이나 기본 범위가 낮을 수 있어도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가중 범위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해야 함
- 청소년성보호법은 영리목적, 제작, 판매, 광고, 소지 등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됨. 미국의 경우는 (법령으로만 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수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하는 모든 행위를—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도 무관하게—같이 보고 형벌에 차이를 두지 않음. 양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면서도 법률에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든, 단순 소지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포하든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임. 이런 행위들이 맞물려 거대 산업을 형성하고 착취를 촉진하고 있음.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만이 아니라 맥락을 보고 심각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임

### (3) 양형인자

구분		양형위안	기관 의견
특별양형인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 양형인자로 조정
		농아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가능하므로 지적 장애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특별양형인자로 볼 수 없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 양형인자로 조정

구분	양형위안	기관 의견
자 가 중 요 소	자수	자수는 일반 양형인자로 조정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유포 전 완전 삭제만 반영
	* 추가 의견	피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는 성착취물 :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수사에 협조하여 공범에 의한 피해 확산 방지 - 불량한 수법에 대한 예시 • 가해자 규모 : 가해자 수, 조직적 범죄, 범죄 수익 규모 등 • 성착취를 촉진하는 기술을 이용했거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범죄 은폐 혹은 확산을 위한 기술을 사용 • 성착취물 피해 아동의 개인 정보를 함께 공개함. • 그루밍에 의한 범죄 : 보호자 동의 없이 사적인 메신저로 연결하거나 만남을 제안하거나 선물 등 대가 제공, 연예인과 만남, 연예인이나 모델로 캐스팅, 아이돌 공연이나 스포츠 관람 제안 등 - 보호자 동의 없이 접근을 시도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가중 요소로 반영 •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여러 차례 설득하거나 회유 등을 시도 • 성착취물을 구하기 위해 검색, 쪽지 보내기 등 여러 차례 접근 시도 •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여러 차례 동의 <sup>9)</sup> 를 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가중요소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함. 실제로 범죄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집요하게 요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를 동의로 간주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었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의견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의견 없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의 연령 : 영아, 유아, 초등학생 등 피해자의 연령이 지나치게 어림. •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큼. • 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의견 없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의견 없음.

구분		양형위안	기관 의견
일 반 양 형 인 지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의견 없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 포함)	의견 없음.
	감 경 요 소	소극 가담	위력이나 위계, 강요에 의한 가담으로 제한
		처벌 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li> <li>•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경우도 많고 가해를 연인으로 생각하거나, 가해자를 동정하는 경우도 있음.</li> <li>• 성인 가해자들은 이러한 아동의 심리를 이용하여 조종하고 통제함.</li> <li>• 만약 처벌불원이 감경사유로 포함된다면 가해자들은 아동의 심리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게 할 것임.</li> <li>•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음.</li> </ul>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심에 의한 진짜 사과인지 가려내어 신중하게 적용,</li> <li>• 가해자들은 감경을 위해 형식적이고 무리한 방식으로 반성을 퍼포먼스처럼 보여주려고 할 것임.</li> <li>• 가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직면하고 성찰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범죄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쉬움.</li> <li>• 반성을 이벤트처럼 표현하고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되어 재발방지의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음.</li> </ul>
	형사 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되어 수사 받은 게 처음이라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적용</li> </ul>	
	가 중 요 소	획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의견 없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음 추가</li> </ul>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동종 벌금형 이상으로 조정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의견 없음.



구분	양형위안	기관 의견
	대한 강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제외)	

#### (4) 집행유예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삭제
  -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초범일 가능성 낮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유포 전 완전 삭제로 수정
  - 유포 전 완전 삭제 외에는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삭제
  -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범죄 재발 방지에 영향을 주기 어려움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삭제
  - 피고인 가족에 대해선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로 지원하고 가해자에게엔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함
  - 또한 영리목적의 범죄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범죄를 지속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수감되어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됨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삭제
- 처벌 불원 삭제

### 차. 십대여성인권센터

#### (1) 총평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를 보면 이번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그러나 금번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취지는 기존의 양형실무가 국민 법감정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 하에,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1개의 소지죄만으로도 5년 이상 실형을 받는다든지, 제작의 경우, 종신형에서 100년 실형에 처해지는 등, 외국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도록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전 국민이 보고 알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이전보다 무겁게 설정하고자 한 것인데, 기존 양형실무를 토대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음

9) 18 U.S. Code § 2422.(b)는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고의로 설득, 유도, 간청, 또는 강요하여 성매매나 성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것 등에 대해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음. 성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을 범죄의 본질로 보고 있음.



- 또한 시대는 빠르게 변화함에 반해 보수적인 법조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강하게 있으므로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양형기준표를 설정하는 것인바 기존 양형실무를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으로 사료됨
- 한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 높이는 경우 고전적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비해 형이 과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바 다른 성범죄에 대하여도 함께 양형기준을 높여 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 (2) 구체적인 검토의견

###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부분

- 비교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임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알선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성매매알선죄의 형량 범위를 참고하였다고 서술되어 있음
  - 그러나 성매매알선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의 행위 태양이 유사한 것도 아니며, 성매매알선죄의 양형 역시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도 본 범죄는 성매매알선죄의 양형범위와 동일한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청소년 강간, 준강간에 대하여 양형기준표 상의 기본형이 5년~8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은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형량 범위를 검토(설명자료 12p)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양형자료 조사결과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심각하게 처벌수위가 낮은데 결국 기존 법조계가 잘못된 양형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므로 기존 통계를 참고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백지상태에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인격살인이므로 살인만큼의 형량이 규정되어야 마땅함
-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인식이 제각각이고 국민들의 법인식에 비해 현저히 형량이 낮으므로 국민 법감정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양형기준표이므로 기존의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 다시 설정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특히 이번 양형기준안을 신설하는데 있어 본질은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너무 낮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시작된 것이므로 기존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이미 드러난 기존 양형의 통계를 따랐다는 점에서 금번 양형기준안은 잘못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는 가중형(8월~1년 6월)조차도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의문임
  - 적어도 상한만큼은 법정형에서 정한 최고에 미치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양형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최근 법정형이 6년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로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중형 상한이 '3년'에 머무른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양형기준안 원문 5p)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에 관한 죄 관련
  -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반포에 관한 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형법상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더욱 높음
  - 그런데 허위영상물 등 편집, 반포에 관한 죄의 양형 감경 영역은 '-8월'로서, 특수폭행이 '2월-1년 2월' 인 것과 비교하여 더욱 낮음(양형기준안 원문 7p)
-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9p)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그 특성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협박·강요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이를 가중요소로 평가하면 족하다고 사료됨
- 허위영상물에 관한 규정 관련
  - 허위영상물에 관한 규정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인정되어 신설된 범죄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 의하면 "하한을 징역 10월로 정하게 되면 양형실무의 92.2% 상당이 감경 영역에 해당한다"는 통계적인 이유로 감경 영역의 상한을 낮게 설정하였음
  - 그러나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 및 반포에 관한 죄는 2020. 6. 25. 시행되어 아직 선고된 예가 많지 않으므로 통계적 사유로 감경 영역을 낮게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임
  - 따라서 위 범죄의 경우 감경 영역의 상한을 높이고, 하한도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나) 양형인자 설정 부분

- 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을 달리하여 이미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불필요하게 감경요소를 다수 규정함으로써 감경의 감경 즉, 중복하여 감경되게끔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처벌불원'에 대해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두는 것은 적당하다고 보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경우 특히 사제지간의 경우 충분히 비난받을 상황이므로 일반가중인자가 아니라 특별가중인자로 가야 적절하다고 사료됨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양형기준안 설명자료 49p)에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단순 공모’인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보고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6p) 단순 공모의 경우 디지털 범죄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특별히 형을 감경해줄 이유가 없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경우 가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심신미약’의 경우 고의로 만취상태가 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의와 마찬가지로 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만취상태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양형기준안 설명자료 37p)
- 1의 나.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18p), 2의 가.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22p), 3의 가.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24p)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유포된 경우에는 완전한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형은 감경이 되는 반면 유포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라도 그 결과가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 폐기한 상태에 이른다고 평가될 정도에만 감경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에 맡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소위 쇼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로 회수되었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경우로 제한되도록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4의 가.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25p)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는데, 성적 수치심, 음란성을 경중의 문제로 평가하게 되면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크므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미수 관련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6항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살인죄에는 미수가 양형요소로 들어가 있는데 양형 감경인자에 미수 없어서 의문임
  - 실무에서는 미수 사례도 많음

- 농아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중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고의무자보다 더 죄질이 나쁘고, 실무에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범행의 비중도 크므로 일반가중인자가 아니라 특별가중인자로 가야 적당함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 협박·강요 죄목에 공갈도 포함할 필요 있음
  - 가중요소 중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를 포함할 필요 있음

#### (다) 집행유예 기준 부분

- 1, 2의 주요참작사유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31, 32p)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하고 있는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유포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3의 주요참작사유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33p)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해당 범죄는 그 특성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범죄이므로, 이 부분은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의 주요참작사유 부분(양형기준안 원문 34p)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로 평가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성적 수치심, 음란성을 경중의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 사회적 유대관계를 집행유예 판단사유로 참작하는 것에 대해, 성착취 영상물 유포 범죄의 경우, 대개 사회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공유, 유포되고 있는게 현실임. 따라서 사회적 유대관계의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 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 (라) 기타 의견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알선 관련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 알면서 알선한 경우 제1항의 직접 제작, 수입, 수출한 자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짐에 비해, 가벼운 형인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고의로 알선한 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바 추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특히 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최종적인 범행의 목적인 경우가 많고 최상선의

범죄자가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알선의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한다면 최상선의 범죄자보다 중간 역할을 한 자들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양형기준안을 개선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을 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즉, ‘몇 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가 아닌 ‘몇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라고 규정)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카.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본 센터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기준안을 통해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두루 상향해 해당 범행을 엄단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의지를 확인하였고, 그간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주요한 감경사유(피고인의 고령 정도, 공탁금액)들을 배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집행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일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고인 중심의 양형기준 적용 배척

-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및 노력, 수사 협조, 피해확산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 범죄 실행 이후에 보이는 측정불가능한 태도적 측면을 해당 범죄 처벌에 반영하는 기준 배제
- 범행 실행 당시 가해자의 물리적 강제 여부, 적극적/악의적 가담 여부, 새로운 기술사용 여부 등은 가해 행위의 적극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가중요소로 적용해야 하는 반면, 동일한 내용을 재판부에서 감형요소로 사용할 경우 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국민적 기대와 미치지 못하는 상황 초래 우려

### (2) 디지털 성범죄의 고유한 특성 고려

- 그간 양형기준 미설정으로 경미하게 처리되거나 문제시되지 않았던 처벌공백 상황을 고려하여, 동종전과 형사처벌 전력없음 감경사유 배제 필요
- 본 범죄 피해는 예측불가능한 확장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를 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 ‘경미한’ 피해 등 피해자가 경험한 불안에 배치되는 용어와 시각 경계
- 디지털 성범죄 감경요소로 ‘농아자’ 명시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 (3) 여성폭력관련법 전반 양형기준안 검토와 반영 요청

- 이번 양형기준안의 진전된 시각과 문제의식을 여타 여성폭력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집행력과 관련자 처벌의 실효성 확보 시급

## ▣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받지 않은 기관 : 총 5개 기관(단체) 회신

### 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2020. 10. 20.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여 『디지털 성폭력, ‘양형부당’을 말하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자료집을 제출함. 토론회 발표 주제 등은 아래와 같음

#### ○ 토론회 발표 주제 및 발표자

발표 1.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양형 판단의 문제들  
백소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2. 미국의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제와 양형기준  
박예안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 3.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안  
유 승 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

발표 4-1.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발표 4-2.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표 4-3.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이 현 숙 (탁틴내일)

발표 4-4.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김 혜 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제출 자료의 분량(약 120쪽)이 많아 개요 부분만을 기재하였습니다. 전체 의견 내용은 별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여성의 당

#### (1) 용어사용에 관하여



-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Ⅲ-2. 양형기준 설정범위>를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범죄, 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 그런데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면 양형위원회가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 성관계 몰래카메라 사건, 유명 앵커의 지하철 몰래카메라 사건 등으로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높아짐.”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 버닝썬 사건과 SBS 전 김성준 앵커 사건은 ‘몰래카메라’가 아닌 ‘불법촬영’으로 정확히 언급되어야 한다.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가 ‘불법촬영’으로, ‘리벤지포르노’가 ‘비동의성적촬영물’로 정의된 바 있음에도 양형위원회가 공문서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문제적인 용어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 (2) 형량 범위 검토건에 관하여

-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Ⅳ. 형량 범위 검토>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그런데 IV-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보면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매우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IV-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에 따르면, 카메라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특수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과거 구약식이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임.”
- 그러나 여전히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30%대에 머물러 있으며, 그조차도 실형(5.2%)보다 집행유예(28.6%)가 5배 이상 높게 선고되고 있다. 2014-2018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단일 유죄판결 현황(2014-2018)에 따르면, 실형 5.2%, 집행유예가 28.6%, 벌금형60.8%,



선고유예가 5.4%이다.

- 이를 고려한다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관한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이전의 수준에서 다소 전환되는 추세에 불과하며, 이를 징역형 선고비율과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서술하는 것은 과도한 임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 (3) 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관하여

#### (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V. 양형인자>에서 일부 범죄에 관해 “피고인이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를 감경 요소의 특별 양형인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V-2-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 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인자이다. 또한 <VI. 집행유예 기준>에서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한해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설정해두고 있다.
- 양형위원회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다.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그러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지나치게 모호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번 유포가 이뤄지면 피해는 무제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성착취물의 완전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으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이를 형식적인 차원에서 악용할 소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본 조항은 형법상 위하력의 행사를 기대하기에도 부적절하다.

#### (나) 처벌불원

-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V. 양형인자>에서 일부 범죄에 관해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의 특별 양형인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V-2-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 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양형인자,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양형인자, 바.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양형인자이다. 또한 <VI. 집행유예 기준>에서 2.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4.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한해 “처벌불원”을 집행유예에 긍정적인 주요 참작사유로 설정해두고 있다.

-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11조 위반을 제외하고는 성폭력 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처벌불원’을 여전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집행유예의 긍정인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처벌불원’은 일반 감경요소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이 갖는 자율권은 크지 않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해 기초 교육 수행 등을 지속하기 어렵듯 성인 여성 또한 성범죄로 인해 학업 및 직무 수행 등을 방해받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전 연령에서 향후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처벌불원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더욱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특징이 쉽지 않거나 유포 등으로 피해가 지속 및 확산되는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을 인지하는 시점이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 및 확정된 시점 이후가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는 부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고려조차 없이 처벌불원을 감경 및 집행유예의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온정적인 처사에 불과할 수 있다.

#### (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V-2-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두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것들 중,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광범위하게 유포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 디지털 성범죄는 극악한 형태와 경미한 형태를 임의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 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것은 어떠한 위하력의 행사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양형기준이 권고수준에 불과하여 여전히 법관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높은 법정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들이 특별 가중인자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형량의 하한선을 상향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했다.

##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및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양형위원회는 양형위원회는 2020.09.15. 양형기준안 설명자료에서 <V-2-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양형인자>에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 가중인자로 두고 있다. 이에 해당 하는 것들 중,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라는 조건은 형법 실무에서 모호하게 작용할 위험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피해자 특징이 어려워 피해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기제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은 이목구비, 얼굴, 얼굴 외의 다른 신체부위 뿐만 아니라 의복 착용의 형태 등으로도 유추 및 확인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열거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인지에도 직접적인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양형위원회는 <V-2-다.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인자>에서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두고 있다. 이는 주로 성기 삽입 영상이 어렵게 찍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를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위원회는 같은 문서의 p.51에서 바.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죄 양형인자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 감형인자로 제시하고 있다.

## 다. 리셋

작년 말까지 상의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 비해 최근 상정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작금의 엄벌기조를 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나아간 데 안주할 수 없다. 제 104차 회의에서 예비 설정된 양형기준에 여전히 비판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실효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일반양형인자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는 형량의 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설령 다수범 영역에 속해 '엄벌' 할 수 있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감경을 위해 얼마든지 그 쫓값을 희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의 양형기준은 그저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우는 작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당사자능력을

검사와 피고인에게 한정하여 인정하고, 인권보장사상에 의거해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고는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자들에게 고작 4개월의 형량은 범죄를 억제할 수도 없고 범죄자의 갱생을 도모할 수도 없는 허울뿐인 기간입니다. 1심에서 문형욱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 상습범의 양형기준은 하한이 10년 6개월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와치맨에게 상습범 법정 가중형의 최고형인 10년 6개월의 형을 구형해 봤자,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영리 목적 반포 상습범의 하한 형량 기준에 따라 6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감경기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탁이 감경요소에서 배제되었듯, 진지한 반성 또한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 남아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형위원회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처벌 감경을 위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반성문의 샘플을 공유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반성문 작성을 통해 감형받았다고 자랑하는 범죄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심지어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 복귀를 염두에 두고 그들이 반성하기를 바라며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법관과 사회를 우습게 알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진지한 반성을 날조하기 위해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태로 봉사활동을 기계적으로 지속하는 범죄자들을 목격한 입장에서, 일반양형인자 속 감경요소인 반성이 대체 누구를 향한 반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달되지도, 진실하지도 않을 것이 자명한 ‘반성’의 기회를 범죄자들에게 주어야 하는지요? 반성문은 그저 판사들이 가해자들을 타당하게 동정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합니다.

췌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법 앞에 조아리는 반성은 그 질적 파악이 달라야 함이 마땅하합니다. 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요소들을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포함시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정도의 배려와 현실 파악이 존재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판례 또한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하라고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의 시도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어떻게 구별할 것

인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와 피고인의 면피용 핑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혹은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 대한 안배가 아닐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넓은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관 각자의 재량 아래 선고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 다름없는 기준이 날 선 여론을 잠재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질 수 없고 실효성이 보장되지조차 어려운 양형 상한의 확장으로 양형위원회가 소임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앞에서 피해자와 그에 연대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양형의 적절한 하한선이 마련되길 염원합니다.

## 라. 부산대 여성주의 대모임 해쳐(Hatcher)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최저 선고가가 4개월로 권고된 것에 반대합니다.
  - 시민들이 측정한 형량범위는 평균 최소 6년이었으며, 법조문 또한 '7년 이하'의 징역을 적시하고 있음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의 감경을 반대합니다.
  -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약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것을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절대로 호기심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임을 무시한 행동이고, 실수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사유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서 구입 등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형량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써, 구입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오선희 변호사님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를 징역 1년 이하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형법에서 해당 범죄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다.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도 이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모든 성범죄의 최저 형량도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소지만으로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이는 약자



가 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인권에 대해 보다 선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약자가 범죄나 피해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을 향하는 화살을 쥐는 사람을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하며, 법이 강자보다는 약자의 편에 가깝게 서게 되길 바라며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가 판사의 작량 감경으로 법정형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 없는 양형기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마. 시민단체 DEBUNK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에 해당하는 감경/기본/가중처벌에 대한 권고형량에 반대한다.

- 양형위원회는 ‘특별가중영역’, ‘다수범 영역’, ‘상습범 영역’을 신설하여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실제 양형기준은 크게 강화하지 않았다. 이는 시민들의 법감정과 전혀 맞지 않는 수준의 양형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가벼운 인식은 바뀌지 않았으며 양형위원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못 이해했음을 나타낸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따라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예외적 조항을 통해 특히 죄가 중한 일부 범죄만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에 걸맞게 높은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형벌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하한선 또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2) 신설된 ‘특별가중영역’, ‘다수범 영역’, ‘상습범 영역’에 반대한다.

- 이번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설된 ‘특별가중영역’, ‘다수범 영역’, ‘상습범 영역’에 의해 형량범위의 폭이 커졌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유형 중 제작 범죄에서 특별가중처벌의 다수/상습범인 경우 형량범위의 최소형과 최고형의 차이가 각각 22년 3월(7년~29년 3월)과 18년 9월(10년 6월~29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중 촬영범죄의 특별가중처벌의 다수/상습범의 형량 범위 차이는 5년 3월(1년 6월~6년 9월), 반포 등 범죄의 다수/상습범인 경우는 7년 6월(1년 6월~9년)과 6년 9월(2년 3월~9년)으로 형량범위의 폭이 기이하게 크다. 이같은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일반양형인자를 통해 형량이 대폭 낮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이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역할에 부적합할 뿐더러, 같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개별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상이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합당하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무분별한 감형을 통해 많은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수준이다. 죄질의 정도가 극악한 범죄자,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된 조주빈 등을 엄벌할 여지를 두었으나, 이것만으로는 “일부 범죄자”에 한한 엄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진정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안의 처벌 강화와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3) 특별감경인자 중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감경인자 중 ‘진지한 반성’과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에 반대한다.**

- 특별감경인자의 특별감경인자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대하여,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입수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와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이다. 그러나 한 번 삭제한 파일도 얼마든지 다시 복원할 수 있기에 기기에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 또는 폐기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인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될 수 없다. 이를 실제 감경의 요소로 본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기관의 무지를 입증하는 행태일 뿐이다.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심각성과 필수성을 고려하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삭제 및 폐기’는 가해자를 위한 감경사유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작용하여 미실행 시 가중처벌사유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내려받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 유포하지 않았다고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유포하면 죄가 무거워지는 것이다. 성착취물의 제작/입수는 성착취물 유포와 분리된 독립적인 범죄이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일상을 파괴하고 평생 남을 피해를 입힌 흉악한 범죄이다. 유포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유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유포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라는 모호한 표현 역시 부적합하다. 이는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기준이 없는 요소는 무분별한 감경을 위해 작용할 뿐이다. 성범죄자들이 유포한 성착취물이 어떻게 되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했다면, 피고인의 감경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성착취물 회수 행위가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회라도 유포된 성착취물은 몇 년이 지나서도 재유포되며, 이에 따라 피해는 반복된다. 이것이 성착취물 유포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이다. 디지털 성범죄 실태가 폭로된 올해임에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 ‘진지한 반성’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은 감경 요소로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반성문은 어떠한 실질적 기능도 하지 않은 채 감형을 위한 허례허식에 불과한 감경 티켓으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 당장 N번방 사건 공론화 해시태그 하나만 검색하더라도 수많은 피해자 연대자들의 양형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 연대자들을 무시한 결과인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경 요소는 성범죄자를 기필코 감형하고야 말겠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력한 의사 표명이나 다름없다.

애초에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만약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엄벌을 자처하며, 직접 반성문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겠는가? 판사에게 전달하는 반성문은 결국 “내가 반성하고 있으니 감형해 달라”는 의사표명일 뿐이다. 이렇듯 감경이라는 보상이 보장된 반성문 제출에 어느 정도의 진심이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반성문 대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형량 감경의 ‘가성비 갑’인 반성문은 ‘진지한 반성’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 기준이 불명확하며, 애초에 기준이 정립될 수조차 없고, 범죄 및 재범 예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감경 요소인 ‘진지한 반성’을 양형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에 대하여, 도대체 디지털 성범죄의 범행에 어떤 참작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양형위원회의 설명을 듣고 싶다.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음란물에 중독되었다, 현실에서 억눌린 상태에서 비뚤어진 영웅심리에 사로잡혔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해준 사례(2019고단1200)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참작할 사유’에 대한 판단을 판사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무책임하며 위험하다. 성적 호기심, 경제적 이유, 불우한 가정환경 등 알수 없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경되는 판례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 양형위원회의 모호한 감경기준 책정은 이를 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장하는 행태로까지 여겨진다.

####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배포 등에 관한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중 반포 등에 관한 범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 중 반포 등에 관한 범죄의 권고형량에 반대한다.

-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영리목적 반포와 영리목적이 아닌 반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한 반포 유형 중에는 성착취물 자체를 재화

로 삼아 성착취물을 물물교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성착취물 반포를 통해 마약 거래나 도박 등의 추가적인 범법행위를 홍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등 직접적으로 금전이 오가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영리 목적 반포’가 존재한다. 그러나 ‘영리’의 법적 해석 범위에 따라 범죄자가 영리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재량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처럼 영리목적 범죄와 영리목적이 아닌 범죄의 경계선이 모호한 데 반해 영리목적 반포와 영리목적이 아닌 반포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차이는 최소 1년으로 너무 크다.

또한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재유포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평생 지속될 고통을 유발하는 것과 같다는 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내려받는 인터넷상의 많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인다는 점, 피해자를 수많은 성희롱적 발언 및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 나아가 오프라인 성폭력의 가능성에 노출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악질적인 범죄이며, 이에 반해 현재 정해진 성착취물 반포 등에 관한 범죄의 양형기준은 가볍기 그지없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웹사이트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그러나 언론이 “양형기준의 대폭 강화”라는 헤드라인을 걸어 양형위원회의 활동을 포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전부터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범행한 범죄인들이 최대 29년 3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극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범죄인들에게 29년 3월의 처벌 권고안이 적용되는 경우란 ‘특별가중영역’과 ‘다수범 영역’, ‘상습범 영역’이 처벌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때 특별가중처벌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범죄를 범행한 경우의 처벌, 다수범 처벌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할 때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처벌, 상습범 처벌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포함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의 처벌이다. 이 모든 영역은 양형기준 역사상 없다가,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갑작스럽게 생성되었기에 그 의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어째서 예외를 만들어 이에 한해 처벌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경우의 형량은 미비한 그대로 두는가?

##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 의견 : 총 65건 제출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개인 의견은 동일인 제출 건수를 포함하여 총 66건이 제출됨
- 각 의견의 주요 요지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전체 의견 내용은 별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0. 12. 7. 양형위원회 제106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0. 12. 중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0. 12. 하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V.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결과보고

### 가. 성과

-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는 그 결과의 중대성에도 실제 처벌은 낮아 많은 비판이 있었음.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신고 형량은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발생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나아가 산업재해나 환경범죄처럼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벌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처벌로 견제하는 논의가 필요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
- 제1세션 소주제인 「산업재해와 양형」에 논의는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될 예정임

### 나. 행사 개요

- 주 제: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 주 최: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 시: 2020. 11. 23.(월) 14:00 ~ 18:00
- 방 법: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다. 참석범위

- 개회사(인사말, 2명):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양형연구회 회장
- 사회자(2명):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원)
- 발표자(3명):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6명) :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유관

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최재혁 김  
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내부: 양형위원, 전문위원, 양형연구회 회원 및 연구회 참여 단체 관계자

## 라. 심포지엄 주요내용

### (1) 1세션 「산업재해와 양형」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정재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가 「산  
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를 주제로 발표

○ 2015. 1.부터 2019. 12.까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사건 통계분석 결과

-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사망한 근로자(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고, 공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다만 합의와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도, 다른 공동피고인이 사망한 근로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고 손해를 배상한 경우, 피해자 측의 과실이 무  
거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도 다수  
있었음
- 위반행위가 ① 안전조치의무(구법 제23조 제1~3항) 중 어떠한 안전조  
치를 위반한 것인지 또는 ② 안전조치의무위반인지 보건조치의무위반인  
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형량 차이가 없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 의견

- ① 기존에 설정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더하  
여, 개정법에 도입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함 ②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보건조  
치의무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는 물론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임 ③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경우 권고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현실화를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임. 다만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연구·분석 없이는 단기간 내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은 중장기적 과제로 봄

(나)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산업안전보건법은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위반 범죄의 성립에 사업주의 고의성을 요하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중대재해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과는 별도의 독립한 범죄군으로 양형기준을 정함이 타당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의 경우 법정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보다 낮음에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보다 높음.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권고 형량 범위를 높일 필요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실효성 있는 양형을 위해서는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양형기준이 필요함. 특히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함이 타당

(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현재 과실치사상 범죄대상 양형기준의 하나의 유형으로 설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조치위반치사죄 외에도 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 위반죄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하여야 함. 이를 통해 단순과실치사상 범죄를 넘어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와 노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독립된 양형기준을 제시해야 마땅함.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인 안전조치위반 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 추가가 필요함

-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정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가 감경인자에 치우쳐 있음. 이는 당해 양형기준이 과실범이라는 전제위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임. 산업안전보건범죄 독립 양형기준이 설정된다면 양형자료 연구를 통해 양형인자 도출을 새롭게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대상은 사실상 기업이고,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로서 이윤추구의 기회와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처벌비용을 교량하여 법준수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효과적임. 이러한 점을 양형기준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면 현실적 징벌 수준으로 벌금형 양형을 조정하고 이를 별도 양형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라)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 발표에 대한 토론

- 미국에서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절차를 사전적으로 마련했는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PCF(Proactive Corporate fault)와 위반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기업이 사후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 RCF(Reactive Corporate fault)가 발전되어옴. 이러한 절차 및 조치 구비 여부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의 가중 또는 감경 양형인자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 의무위반의 판단인자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수, 의무위반을 조장하거나 용인하는 정책 및 시스템의 존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의 양형인자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법정형에 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낮고, 양형기준 설정 후 오히려 평균형량이 감소했다는 분석을 근거로 기업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함

## (2) 2세션 「기업범죄의 양형」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원회 자문위원)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

- 미국 연방양형지침에 포함된 준법 프로그램 논의 성과
  - 준법장치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함. 즉 올바른 준법장치는 구성원의 의식개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함
  - 준법장치는 친기업적이라기보다 친사회적(pro-social)임. 다시 말해 준법장치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
  -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그것이 강력할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님. 강한 준법문화는 기업의 창의성, 위험감수능력, 도전정신 등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임
  -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줌
  - 제3자가 준법장치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 특히 효과적인 준법장치가 문화적 요소를 지닌다고 할 때 더욱 어려워짐
  - 준법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존재 여부라기보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는지 여부임. 준법장치는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제도라기보다,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정

의되는 것이 더 적절함

○ 한국사회에 적용 시(기업범죄의 양형요소로서 준법장치를 고려할 때의) 시사점

- 올바른 준법장치는 기업 구성원의 의식 향상을 도모해야 하고, 기업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한국사회에는 다음 두 가지 제안을 함. ① 중대한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부재를 양형상의 가중요인으로서 고려하는 것, ② 중대하지 않은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존재를 양형상 감경요인으로 고려하는 것

(나)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

- 준법 프로그램은 조직, 우리 법상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이고, 자연인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
-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는 범죄행위 시에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규정함. 이는 조직이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범죄의 발생을 막지 못하였을 경우에 조직의 책임을 일부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임. 이와 달리 범죄가 발생한 후에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는 경우라면, 양형인자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 준법 프로그램을 우리 양형기준에 도입하는 것보다는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음. 준법 프로그램의 존재를 양형에 있어 감경사유 또는 가중사유로 삼는다면, 양벌규정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란 ‘준법 프로그램의 존재’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함.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준법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 감경 또는 가중을 논하기 이전에, 면책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됨

(다)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형사절차가 회사 내부의 건전한 규범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

-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추상적 언명 외에 조직의 행동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기에, 검사의 소추 여부에 대한 재량이 사실상 무한대인 반면 법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은 0에 가까움
- 벌금형에 대한 기준이 없이 자연인과 법인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구형 또는 선고하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준법장치의 존재 내지 부재를 단지 양형상 감경/가중요소로 고려한다고 하여 바람직한 윤리 내지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미국 연방양형지침상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별반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법이나 법률가, 특히 형법의 시각이 회사 내부를 포착하기에는 충분히 섬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됨

(라) 최재혁 변호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발표에 대한 토론

- 기업범죄에 대하여 처벌 수위 강화 일변도의 정책형성은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이전에 기업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키게 됨. 반면 자율적 규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문제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유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가지는 위반행위 조기발견 및 시정조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도 양형에서 이러한 부분이 유리한 인자로 참작될 필요가 있음
- 양형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고려하려는 이유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유

인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 제대로 된 시스템을 운용하여 왔다면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재해사고의 대부분이 건설안전사고로 발생하며, 특히 건설업 사망인원수는 전체산업 대비 3배 이상, 영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 수준이라고 함. 특히, 올해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의 화재사고 이후 건설현장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산업안전사고, 특히 건설안전사고에 있어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처벌 여부나 양형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마.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식 전 행 사	화상회의 접속 확인	
14:00~14:10		개회식	사회 :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2분)	
14:10~15:50 [100분]	◆ 제1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산업재해와 양형」 사회 : 이주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 위원)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이승원 서울남부지법 판사·정재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부이사관)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15:3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3 :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 주제발표 및 토론 「기업범죄의 양형」 사회 : 김우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양형위 자문위원)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 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	

시 간	내 용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1 :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2 :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 토론자 3 : 최재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7:35-17:50	중 합 토 론	
18:00	◆ 폐회	
18:10-18:30	정기총회	



## VI. 2019 연간보고서 발간·배포

### 가.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20. 4. 20. 양형위원회 제101차 회의에서 ‘201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 건’ 의결

### 나. 추진 경과

- 2020. 4. 20. : 2019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20. 10. 하순 : 초안 작성
- 2020. 11. 중순 : 견본 제작
- 2020. 11. 하순 : 교정 작업
- 2020. 12. 초순 : 인쇄의뢰 및 제작
- 2020. 12. 중순 :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 다. 발간 내역

- 발간 부수 : 1,6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88×258, 2도 양면
  - 650여 쪽

### 라. 국회 보고

- 2020. 12.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공문 접수 후, 국회 각 실을 방문하여 배부 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 송부

### 마.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연간보고서 책자의 적절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도서관 등

## VII.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 가. 개요

- 운영지원단은 1심 판결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살인범죄, 뇌물범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41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임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분석 목적

- 양형기준 활용실태 파악
- 양형기준 준수여부 파악
- 양형기준 적용효과 파악
- 양형기준 개선사항 확인

### 다. 분석 대상

- 제1, 2, 3, 4, 5, 6기 양형기준의 각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에 1심에서 선고된 1, 2, 3, 4, 5, 6기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

### 라. 분석 내용

-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이유 기재 여부,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에 따른 형량 비교분석, 특별양형인자와 형량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함

## VIII. 2021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양형기준 설정·수정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기 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설정 : 균형법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정 : 선거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해설 수정</li> <li>- 제7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수정                설정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수정 : 마약범죄, 강도범죄,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li> </ul>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6. 10. 제95차 회의 : 양형기준 설정·수정대상 범죄군 선정</li> <li>- 2019. 7. 8. ~ 7. 26. 전반기 설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출장 조사 실시</li> <li>- 2020. 1. 6. 제99차 회의 :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2020. 2.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및 양형기준 해설 수정</li> <li>- 2020. 4. 20. 제101차 회의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li> <li>- 2020. 5. 18. 제102차 회의 :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여 심의하기로 의결</li> <li>- 2020. 7. 1.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및 균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li> <li>- 2020. 7. 9. ~ 7. 29. 후반기 설정·수정 대상범죄에 대한 양형자료 출장 조사 실시</li> <li>- 2020. 7. 13. 제103차 회의 :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li> <li>- 2020. 9. 14. 제104차 회의 : 강도범죄·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안 의결</li> <li>- 2020. 10. 15. 강도범죄,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li> <li>- 2020. 11. 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5차 공청회 실시</li> <li>- 2020. 11. 23.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개최</li> <li>- 2020. 12. 7. 제106차 회의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9. ~ 2021. 1. 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심의·의결</li> <li>- 2020. 12. ~ 2021. 1.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li> </ul>

	<p>심의·의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2. 공청회(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관계기관 의견조화</li> <li>- 2021. 3. 주거침입범죄·환경범죄 양형기준, 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2	<p><b>양형정책 연구·심의</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 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본산(Control Center)의 역할을 수행</li> <li>- 특히,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기관, 실무계, 학계 등 각계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li> </ul>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 6. 3. 양형연구회 3차 심포지엄</li> <li>- 2019. 11. 25. 양형연구회 4차 심포지엄</li> <li>- 2020. 11. 23. 양형연구회 5차 심포지엄</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세미나 개최 :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축적해나갈 예정(2018. 11. 1. 양형연구회 운영위원회 의결)</li> <li>- 연구주제 리스트화 :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주제의 선정 필요성에 따라,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리스트화할 예정</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3	<p><b>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수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li> <li>-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li> </ul>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수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11. 2. 공청회 개최</li> <li>• 2020. 9. ~ 10.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침입범죄 및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li> <li>• 2021. 2. 5. 공청회 개최</li> <li>• 2021. 1. ~ 2.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li> <li>-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법 신뢰도를 제고</li> <li>•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의견 수렴</li> <li>•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4	<p><b>양형기준 공개</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기준 관보 게재는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 절차</li> <li>-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양형기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제고</li> <li>-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위원회 홍보</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기준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li> <li>-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sc.scourt.go.kr">http://sc.scourt.go.kr</a>)에 새롭게 시행되는 양형기준 게시</li> <li>- 『2021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5	<p><b>2020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li> <li>• 2020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및 2021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정리</li> </ul> </li> <li>- 2021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li> <li>•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li> </ul> </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6	<p style="text-align: center;"><b>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li> <li>-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의 대외 홍보</li> </ul>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출장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예산 또한 감액되어 미 실시</li> <li>-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를 위해서 2020. 12.경 ‘2020 영문 양형기준’ 발간 예정</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6. ~ 10.경. 외국 대법원,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li> <li>-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양형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한국 양형위원회의 활동성과에 관한 홍보</li> <li>- 외국 사법기관 등을 방문함에 있어 양형위원회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영문 브로셔 제작</li> <li>- 영문판 양형위원회 홍보 책자 발간을 통한 양형기준 국외 홍보</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7	<p style="text-align: center;"><b>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 업무시스템 개선</b></p> <p>○ 추진목적</p>



	<p>-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기준 운영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용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p>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사용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시스템 개선 요청 내용을 정리 및 취합하여 해당 내용이 시스템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li> <li>• 2021년 시행될 설정범죄(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및 수정범죄(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li> <li>• 전산정보관리국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 수정·보완</li> </ul> </li> <li>-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 1. 및 2021. 7.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함양)</li> <li>•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분석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li> </ul> </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p>
8	<p><b>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월 단위로 전수조사</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p>
9	<p><b>효율적인 양형 통계분석</b></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기 양형기준안 연구 및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필요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li> <li>-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양형기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li> </ul>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및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범죄군별 사건분포, 선고내역, 양형기준 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통계 산출</li> <li>- 각종 양형인자에 대한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 실시하여 양형 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파악</li> <li>-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회 보고</li> <li>- 양형기준 수정 및 양형정책 수립 시 분석내용 반영</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10	<p><b>新양형기준시스템 개선·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12. 新양형기준시스템이 개발되어 2019. 3. 정식오픈</li> <li>- 新양형기준시스템 사용자인 법관의 판결문 작성 시 이용 편의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 반영</li> </ul> </li> <li>○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법정형 등 수정 반영</li> <li>- 운영점검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양형기준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 시스템에 반영</li> <li>-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련 이용 편의 내용 시스템에 반영</li> <li>- 2021년 시행될 설정범죄(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및 수정범죄(과실치사상 범죄군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li> </ul> </li> </ul>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 IX.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0. 11. 15.까지 총 194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0.5.7.~7.11.(32)	○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0.5.17~5.18.(3)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
3	2020.5.24.~8.24.(75)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
4	2020.5.27.(1)	○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에서 소극가담 및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감경요소가 되나, 반대로 적극가담,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및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5	2020.6.1.~9.16.(35)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6	2020.6.1.~6.30.(4)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내용
7	2020.6.2.~7.28.(2)	○ 취지불명
8	2020.6.4.(1)	○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9	2020.6.4.(2)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내용
10	2020.6.7.~6.14.(8)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N번방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
11	2020.6.13.~10.31.(1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현물에서 가상물은 처벌에서 제외하여 달라라는 내용
12	2020.6.20.(1)	○ N번방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해 달라라는 내용
13	2020.7.2.(1)	○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14	2020.7.11.(1)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양형기준 마련 시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양형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
15	2020.7.11.(1)	○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신속한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
16	2020.7.26.(1)	○ 배상명령제도의 시정 요청 의견
17	2020.7.28.(1)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18	2020.8.3.(1)	○ 특수손괴죄의 규정을 해석하여 달라라는 내용
19	2020.9.2.(1)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가 제출되더라도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
20	2020.9.10.~10.23.(3)	○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의 경우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21	2020.9.15.(1)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형기준 범죄군 외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이 있는지 여부와 검사의 구형기준이 궁금하다는 취지의 내용
22	2020.9.18.~9.21.(5)	○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
23	2020.11.15.(1)	○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에서 소극 가담 및 전과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감경요소가 되나, 반대로 적극가담, 전과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및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는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내주신 의견은 명예훼손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디지털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작성한 글만으로는 민원취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음주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



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께서 요청하는 N번방 관련 가해자들의 재판기일 연기와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과실치사상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

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귀하의 배상명령제도의 시정 요청 의견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0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의 경우 이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교통범죄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재는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검사의 구형기준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교통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0. 11. 15.까지 총 3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0.10.7.(1)	○ 위증, 무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020.10.13.(1)	○ 형사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3	2020.11.12.(1)	○ 음주와 관련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10. 7. 접수번호:2AA-2010-015559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증, 무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10. 13. 접수번호:2AA-2010-0351986)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2020. 11. 12. 접수번호:2AA-2011-0347909)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음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0. 11. 15.까지 총4건)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20.10.13.(1)	○ 재판에 필요한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2	2020.10.13.(1)	○ 사기, 성매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3	2020.10.23.(1)	○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4	2020.10.26.(1)	○ 개별 사건 관련 양형기준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10. 13.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10. 13.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사기, 성매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10. 23.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

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0. 10. 26.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가 요청하신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